

---

# **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**

---

2020. 5. 20.

관 계 기 관 합 동

## 목 차

I. 기금조성 배경 및 경과 .....	1
II. 기금 운용 기본방향 .....	2
III. 기금 자금지원 방안 .....	3
1. 자금지원 대상 .....	3
2. 자금지원 규모 및 방식 .....	4
3. 자금지원 조건 .....	5
4.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.....	7
5. 민간은행과의 견고한 협업체계 구축 .....	7
IV. 향후 계획 .....	8
【 참고1 】 기간산업안정기금 자금지원 절차 .....	9
【 참고2 】 기금 관련 산업은행법령 주요 내용 .....	10

## I. 기금조성 배경 및 경과

- [1]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기업부문 실적부진이 지속
- 기업부문의 실적 둔화는 기업의 비용감축 노력으로 이어져 고용 감소를 본격적으로 유발하기 시작
    - \* 취업자증감(전년동기비 만명) : ('19.4Q) 42.2 ('20.1월) 56.8 (2월) 49.2 (3월) △19.5 (4월) △47.6 [→'20.4월 취업자 감소폭은 '99.2월(△65.8만명) 이후 최대치]
- [2] 정부는 경기위축·매출부진 등에 따른 고용불안에 대응하여 특단의 대책으로 '기간산업안정기금' 조성을 발표(4.22., 제5차 비상경제회의)

- ▶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
  - ▶ 국민경제,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을 대상으로 기금 자금지원
- ※ 코로나19 이전에 부실이 발생한 기업은 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
→ 주채권은행 중심의 기업회생프로그램 활용
- ▶ 기금 자금지원시 고용안정, 정상화 이익 공유 등 지원조건 부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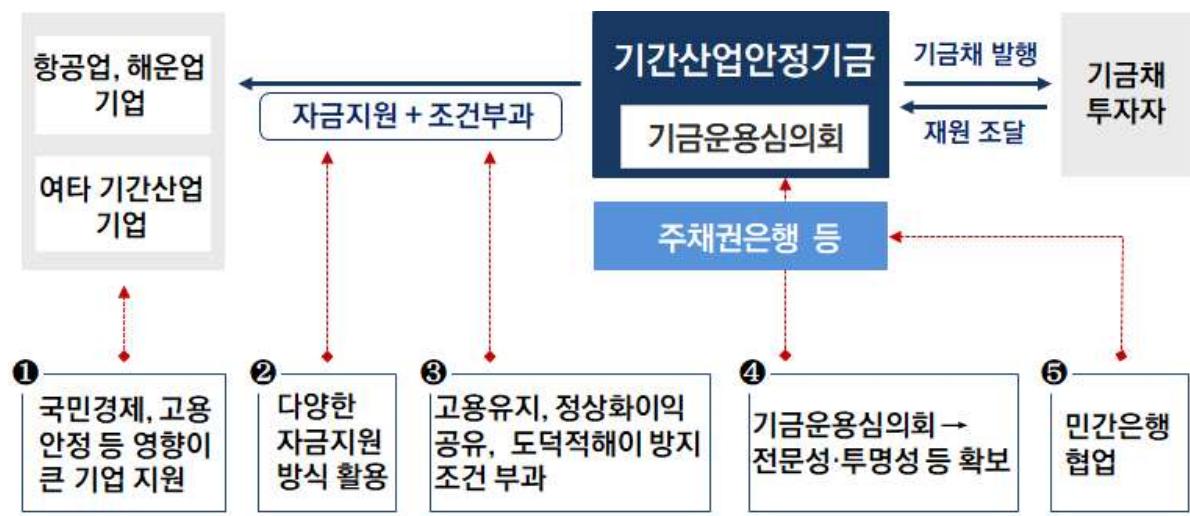
- [3] 국회의 적극적 협조 등을 토대로 신속하게 법적근거 등 마련
-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 6일 만에 본회의에서 의결(4.29.)하고,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 후 6일 만에 국무회의 의결(5.12.)
    - \* [산은법] 의원입법 발의(4.23.) → 정무위 의결(4.28.) → 법사위·본회의 의결(4.29.)
    - \* [산은법 시행령] 입법예고(5.6.) → 국무회의 의결(5.12.)
  - 기금 재원조성을 위한 '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'도 긴급 임시 국무회의(4.25.)를 거쳐 산은법과 함께 본회의 의결(4.29.)

⇒ 기간산업안정기금 관련 제도적 기반이 구비된 만큼, 기금 운용 방안을 확정하여 속도감 있게 자금지원 추진

## II. 기금 운용 기본방향

- ① 국민경제, 고용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 중심 지원
- ② 기업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지원
  - 대출,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, 자산매수, 채무보증 등
- ③ 재원마련에 국가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자금이용 조건 부과
  - 고용유지 조건, 추후 정상화 이익 공유 장치 및 임직원·주주 등의 도덕적 해이 차단방안 등 조건 부과
- ④ 기금운용의 전문성·투명성 확보
  -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기금운용심의회 구성·운영
- ⑤ 효율적인 기업 심사·지원을 위해 민간은행과 협업체계 구축

### 【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체계 】



### III. 기금 자금지원 방안

1

#### 자금지원 대상

- ◇ 기금 설립근거인 산업은행법령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토대로 지원대상 업종 및 기업 요건을 설정

##### ① 지원대상 업종 요건 (산업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사항)

- 국민경제,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<sup>\*</sup>으로서 산업은행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종

\* 산은법 제29조의2 제2항 규정사항 : 방위사업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방산업체가 속하는 업종,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 등

- 산업은행법 시행령 규정 사항

i ) 항공업(항공운송업, 항공운송 지원 서비스업)

ii ) 해운업(해상운송업,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, 수상화물 취급업)

iii)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급격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국민경제,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기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으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<sup>\*</sup>하는 업종

\*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 필요

##### ② 지원대상 기업 요건 (①과 ② 모두 충족 필요)

① 국민경제 영향이 큰 기업 ⇒ (요건) 총차입금 5천억원 이상

② 고용안정 영향이 큰 기업 ⇒ (요건) 근로자수 300인 이상

\* [예외①] 기금지원이 없을 경우 핵심기술 보호, 산업생태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재부장관·금융위원회가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\* [예외②] 국민경제·고용안정·국가안보 및 기간산업 생태계 유지 등을 위하여 기재부장관·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조원 범위 내에서 기금을 활용한 "협력업체 지원 특화 프로그램" 도입

⇒ 요건충족 기업에 대하여 주채권은행 의견수렴\*, 산은 심사를 거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지원 심의·결정

\* 주채권은행 의견수렴 결과,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

- ◇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지원

### 가. 자금지원 규모

- 원칙적으로 코로나19로 감소한 예상 매출흐름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경영상 필요자금 규모를 산출하여 해당 수준만큼 지원
  - \* 자금지원 규모 = 경영상 필요자금(매입채무+이자비용+운영비용) - 예상 매출
- 기존 차입금 상환 목적의 소요자금은 자금지원 규모 산정시 포함하지 않되, 불가피한 경우\*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함
  - \* 차입조건 변경에도 불구하고 기존 차입금 상환이 불가한 경우로서, 기금지원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주채권은행 의견 등을 수렴하여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·결정

### 나. 자금지원 방식

- 기업 여건을 감안하여 유동성 지원, 자본력 보강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자금지원 실시
  - ① 자금 대출 : 운영자금 부족분 중심으로 지원하고, 대출금리는 “시중금리+@” 수준으로 설정
  - ② 주식연계증권 인수 : 지원총액의 최소 10%는 전환사채, 신주 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\*의 인수 형태로 지원
    - \* 전환행사가격은 최근 시장가격 반영, 전환청구권리행사기간은 기금종료일까지로 설정
  - ③ 기타 : 기업 자금수요에 맞추어 자본력 보강, 자산매수, 채무 보증 등 경영상 어려움 극복에 적합한 지원방식을 활용

### 다. 재원 조달

-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재원은 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
  - 기금채권은 40조원 한도 내에서 지원자금 소요, 채권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순차 발행
- 기금설립 직후, 지원자금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채권先발행

◇ 국가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고용안정 유지, 정상화 이익 공유, 주주·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차단 등을 위한 조건 부과

## 가. 고용안정 노력 유도

### ① (고용유지) 기업이 일정수준 이상의 고용규모를 유지하도록 유도

- 고용유지 수준 : '20.5.1. 기준\*' 근로자수\*\*를 최대한 유지하되, 최소 90%\*\*\* 이상 유지

\* 기간산업안정기금 설립을 규정한 산업은행법 시행일

\*\* 지원대상 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

\*\*\* 불가피하게 90%보다 낮게 설정해야 할 경우,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정

- 고용유지 기간 : 기금지원 개시일부터 6개월간 유지

- 준수여부 점검 :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확인을 통해 점검

\* 기업이 제출하는 월별 근로자수 자료를 산업은행 및 고용부에서 확인

### ② (고용안정·상생협력 노력) 기업은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사항\*을 산업은행에 제출(고용노동부와 공유) → 필요시 산업은행이 고용노동부 협조를 받아 확인

\* 예시 : 경영상해고 자체, 전환배치, 근로시간 조정, 복리후생비 감축 등

-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사항\*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

\* 예시 : 사내 협력업체 고용유지(지원기업과 비례적 보호 원칙), 경영상 어려움의 부당전가 금지, 계약기간 만료전 일방적인 계약해지 금지, 합리적 사유 없는 계약단가 인하 금지 등

## 나. 경영개선 노력

### □ 기업이 기금 자금지원에 앞서 필요 유동성 확보 노력(불필요한 자산매각 등)을 최대한 기울일 것

- 주채권은행이 동 사항을 확인하여 산업은행에 의견 제시

## 다. 이익공유 장치

- 총 지원금액의 최소 10%는 주식연계증권(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 등) 취득 형태로 지원

◇ 전환사채(CB)-신주인수권부사채(BW) 투자 기본 기준

■ 전환가격·행사가격

- ① [상장법인] 「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」 등을 준용하여 산정

\*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,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,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

- ② [비상장법인] 기금운용심의회가 지정하는 2개 이상의 회계법인의 가치평가방법(이익접근법, 시장접근법 등)에 따라 산출한 가격을 토대로 「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」, 해당기업에 대한 既투자 사례 등을 고려하여 결정

- 이자율 : 투자시점 예상 내부수익률(IRR)에 기반하여 만기이자율 등 결정

- 전환청구·권리행사 기간 : 자금지원 개시일 이후 1년 경과시점 ~ '25년말

- 주식연계증권의 구체적 조건은 별도 심사·승인후 약정

## 라. 도덕적 해이 방지 조건

- ① (이익배당 금지) 자금지원 기간중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금지

- ② (자사주 매입 금지) 자금지원 기간중 자사주 매입 금지\*

\* 예외 : 퇴직직원 보유 우리사주 매입,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입 등

- ③ (고소득 임직원 연봉 동결) '19년도 연봉\* 2억원\*\* 이상 임직원의 경우, 자금지원 기간 동안 '19년도 연봉 수준으로 보수 동결

\* 총급여액      \*\* 2018년 기준 근로소득 상위 0.5%

- ④ (계열사 지원 금지) 자금지원 기간 동안 지원금이 모회사 및 계열사 지원에 우회 활용되는 것을 차단

- 모회사·계열사에 대한 자금대여, 채무보증,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 등 기금지원을 받은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조치를 포괄적으로 금지

⇒ 기업이 지원조건 미이행시 즉각 시정을 요구하고, 미이행 상황 지속시 가산금리 부과, 지원자금 감축·회수 등 조치

## 4

### 기금운용심의회 설치

◇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의 전문성·책임성 확보와 투명하고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심의회 설치·운영

- 금융·경제 또는 산업에 관한 경험·지식이 풍부한 위원으로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→ 전문성 확보
  - \* 위원 구성(총 7명) : 국회 소관 상임위 추천 2명, 기재부 장관·고용부 장관·금융위원장·대한상의 회장 추천 각 1명, 산은 회장이 지명하는 산은 임직원 1명
- 기금 관리·운용 정책, 자금지원 및 지원조건 부과 등 기금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→ 책임성, 투명성 등 확보
-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토대로 산업은행과 주채권은행이 자금 지원한 경우로서, 고의·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기금 관리·운용 업무처리시 면책 → 적극적인 운용 유도

## 5

### 민간은행과의 견고한 협업체계 구축

◇ 효율적인 기금 자금지원 및 집행을 위해 산업은행-민간은행 간의 협업체계 구축

- 산은-민간은행권간 금융지원 협업 추진
  - ① 자금지원 신청 기업에 대한 심사시 협업
    - 민간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경우, 신청 기업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확인
    - 신청 기업이 기금의 자금지원으로 일시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
  - ② 기금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유예
    - 기금 지원자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유도하거나 기존 대출금의 금리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행위를 제한

## IV. 향후 계획

### 주요 일정

기금 운용  
기본방향 마련

5월

기금 출범  
완료

5월 말

자금지원 개시

6월 중

### 세부 계획

- ① 산업은행법 개정 (5.1. 시행)
- ②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 (5.12. 시행)
- ③ 「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」 발표  
(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, 5.20.)



- ①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사무국 설치
- ② 산업은행-은행권 금융지원 협업체계 구축
- ③ 제1차 기금운용심의회 개최  
  
\* 기금운용계획, 채권발행계획 등 의결



- ①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발행 (6월초)
- ② 자금지원 신청 접수 (6월초)
- ③ 주채권은행 의견조회 및  
산업은행의 자금지원 요건 심사  
→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(6월)
- ④ 자금지원 실행 (6월~)

## 참고1

## 기간산업안정기금 자금지원 절차

- ◇ 자금지원 범위내 기업이 지원 신청시, 주채권은행 등 의견을 수렴한 후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산은이 자금집행



- ① (목적)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며,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'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' 설치
- ② (자금지원 대상) 국민경제,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
- ③ (재원)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\*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등
 

\* 정부는 동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보증 가능
- ④ (지원방식) 자금 대출, 자산 매수, 채무 보증, 전환사채·신주 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인수를 포함한 출자, 자금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 및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·투자 등

※ 자금 지원으로 인해 보유하게 되는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음

\* 예외적으로 자금지원 조건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자금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사 가능

- ⑤ (자금지원 조건) 국민경제와 고용안정 등을 위한 조건부과 가능
  - 일정 수준으로 고용 유지, 총 지원액의 20% 범위 내에서 출자에 따른 자금지원 포함, 경영개선 노력, 이익의 배당·자기주식 취득·일정 소득수준을 넘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의 인상·계열사 지원 등 목적외 용도 사용을 금지
- ⑥ (관리)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기본정책, 자금지원 사항 등 심의를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 설치
- ⑦ (기금 운용기간) '25년 말까지'